

本協 1977年度 第2回 臨時總會(77. 8. 30)에서  
改正된 倫理規約, 倫理委員會規定, 職制規定을  
아래와 같이 公布한다.

### 회장 규칙

#### 1. 윤리규약 개정

현 행	개 정
<p>제14조 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원(교육 공무원을 포함한다)</li> <li>2. 정부 투자 기관의 임직원</li> <li>3. 사립학교 법에 의한 전임 강사급 이상의 교직자</li> <li>4. 법인 또는 개인 기업체의 상임 임원(대표자는 제외 "건축사"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우에 한 한다) 또는 직원</li> <li>5. 전 각호에 준하는 직</li> </ol>	<p>제14조 개업중인 건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li> <li>2. 정부 투자 기관의 임직원</li> <li>3. 삭제</li> <li>4.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의 임직원 단, 건축사가 사주 또는 업주인 동시에 대표인 경우와 비영리 법인체의 명예적 임원은 제외한다.</li> <li>5. 기타 법령에서 겸직이 금지된 직종 부 칙 본 규약은 197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li> </ol>

#### 2.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p>제 9조 (심의의 발의) 심의의 발의는 다음의 경우에 발생한다.</p> <p>(1) 협회 윤리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부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을때</li> <li>2. 관계 관청의 통고가 있을때</li> <li>3.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때</li> <li>4. 지부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의 요청이 있을때</li> </ol> <p>(2) 지부 윤리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의 발의가 있을때</li> <li>2. 정회원의 요청이 있을때</li> <li>3. 간사회의 요구가 있을때</li> <li>4. 관계 관청의 통고가 있을때</li> </ol>	<p>제 9조 (징계의 요청) 징계의 요청 권자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회 윤리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회장</li> <li>나. 지부장</li> <li>3. 삭제</li> <li>4. 삭제</li> </ol> </li> <li>2. 지부 윤리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부장</li> <li>2. 삭제</li> <li>3. 삭제</li> <li>4. 삭제</li> </ol> </li> </ol>

현 행	개 정
<p>제10조 (위원회 소집)</p> <p>(1)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 발의를 받았을 때는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심의상 서류의 검토 또는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서류의 검토 또는 사건의 조사를 요하는 기일은 포기하지 아니한다.</p> <p>(2) 위원장은 전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사건의 조사를 이사회에 요청 할 수 있다.</p>	<p>제 10조 (위원회 소집)</p> <p>(1)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2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2)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사항의 조사를 징계 요청 권리에게 요청 할 수 있다.</p>
<p>제11조 (심의 대상의 의견 청취)</p> <p>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된 건축사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할 때는 그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p>	<p>제 11조 (징계 대상자의 의견 청취)</p> <p>위원장은 징계의 요청 대상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할 때는 그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p>
<p>제12조 (징계구분)</p> <p>(1) 징계에 대한 결의는 다음 각항의 행위에 의거 견책, 자격정지 및 제명의 3종으로 구분 결정되어 징계대상 행위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p> <p>(2) 견책에 해당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촉자에 대한 불성실한 행위</li> <li>2. 다른 건축사에게 대한 비방행위</li> </ul> <p>3. 건축 사간의 불미한 행위 및 다른 기술자와의 한 분쟁행위</p> <p>4. 규약 제 2, 3, 6, 12 및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p> <p>(3) 6개월이상 2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건축사의 권익을 유린하였다고 인정하는 행위</li> <li>2. 규약 제 4, 5, 7, 8, 9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li> <li>3. 특히 비열한 방법에 의한 다른 건축사와의 경쟁 행위</li> <li>4. 3회 이상의 견책을 받았을 경우</li> </ul> <p>5. 건축사 법령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 또는 사무소 개설의 기한부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p> <p>(4)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사로서 자기나 다른 건축사의 권익이나 명예를 극히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행위</li> <li>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또 그 제재를 받았을 경우</li> <li>3. 5회이상 견책을 받았을 경우</li> <li>4. 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li> <li>5. 건축사법령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취소 또는 사무소 개설취소를 받았을 때</li> </ul>	<p>제 12조 (징계구분)</p> <p>징계에 대한 결의는 다음 각항에 의거 경고, 견책,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 결정되어 징계 대상 행위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p> <p>(1) 다음 행위는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위 해손 행위</li> <li>2. 규약 제 2, 3, 6, 12 및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li> </ul> <p>(2) 다음 행위는 6개월이상 2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좌동</li> <li>2. 좌동</li> <li>3. 특히 비열한 방법에 의한 다른 회원과의 경쟁 행위</li> <li>4.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을 합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li> <li>5. 좌동</li> <li>6. 회원으로서 자기나 다른 회원의 권리이나 명예를 금지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행위</li> <li>7. 좌동</li> <li>8. 좌동</li> <li>9. 좌동</li> </ul>

<p>6. 업무 수탁을 목적으로 국내에 2개소 이상 사무소를 정하고 업무를하는 행위</p> <p>7. 윤리규약 제 14조에 해당하는 행위</p> <p>8. 건축사 사무소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p> <p>9.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p>	<p>10. 좌 동</p> <p>11. 좌 동</p> <p>12. 좌 동</p> <p>13. 좌 동</p>
<p>제 16조 (재심청구)</p> <p>협회 또는 지부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징계 통고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직접 협회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 청구를 할수 있다.</p>	<p>제 16조 (재심청구)</p> <p>협회 윤리위원회 또는 지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피징계자는 징계결과의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협회 윤리위원회에 재심의 청구를 할수 있다.</p>
<p>신 설</p>	<p>제 17조 (재심의 청구권자)</p> <p>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징계자 및 그 대리인</li> <li>2. 피징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징계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또는 그 대리인</li> </ol>
<p>제 17조 (징계 발효)</p> <p>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된후 위원장 명의로 선고함으로서 발효한다.</p>	<p>제 18조 (징계 발효)</p> <p>좌 동</p>
<p>제 18조 (사면권)</p> <p>(1) 회장은 징계처분된자의 정상에 따라 윤리위원장에게 사면을 요청 할수 있다.</p> <p>(2) 회장으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사면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p>	<p>제 19조 (확인조치권)</p> <p>(1) 회장은 징계처분된자의 정상에 따라 윤리위원장에게 확인조치를 요청 할수 있다.</p> <p>(2) 회장으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윤리위원장은 윤리 위원회의 의결로 확인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부 칙</p>
	<p>본 규정은 197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 3. 직제 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p>제 3조 (업무 부서)</p> <p>(1) 본 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어 부에는 과를 둘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무부</li> <li>2. 기술부</li> <li>3. 기획부</li> <li>4. 사업부</li> <li>5. 출판부</li> </ol> <p>신 설</p> <p>(2) 각부의 업무 분장은 별표 2와 같다.</p>	<p>제 3조 (업무 부서)</p> <p>(1) 좌 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좌 동</li> <li>2. 좌 동</li> <li>3. 좌 동</li> <li>4. 좌 동</li> <li>5. 좌 동</li> </ol> <p>(2) 협회에 상설감사실을 두고 선임된 감사의 직속하에 감사 보조원을 두어 감사 업무를 하게 할수 있다.</p> <p>(3) 각부의 업무 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업무 분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p>
<p>신 설</p>	<p>부 칙</p> <p>본 규정은 197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p>